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46-14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2016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실무 가이드]

국민권익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2016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실무 가이드]

CONTENTS

제1장 부패영향평가제도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 6
2. 부패와 부패유발요인 ··· 8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 10
4. 부패영향평가 대상 ··· 11
5. 부패영향평가 기준 ··· 14

제2장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1. 의의 및 필요성 ··· 18
2. 평가대상 ··· 19
3. 평가 제외 대상 ··· 20
4. 평가 절차 ··· 21
※ 부패영향평가 서식 ··· 24

제3장 평가기준별 평가 방법

1. 준수 ··· 28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28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38
(3) 특혜발생 가능성 ··· 51
2. 집행 ··· 59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59
(2)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71
(3) 재정누수 가능성 ··· 81

3. 행정절차 ---- 90
(1) 접근의 용이성 ---- 90
(2) 공개성 ---- 96
(3) 예측가능성 ---- 104
4. 부패통제 ---- 114
(1) 이해충돌가능성 ---- 114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128

| 참고자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136

제4장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사례

1. 현행법령 평가 -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148
2. 제 · 개정법령 평가 -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94

제5장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1. 취지 ---- 210
2. 추진절차 ---- 211
3. 시간계획 ---- 211
4. 컨설팅 실시현황 ---- 212

부패영향평가 관련 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14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4
3.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 217

제1장

부패영향평가제도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2. 부패와 부패유발요인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4. 부패영향평가 대상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 부패영향평가 의의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부패 발생 이전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부패영향평가 목적

- 첫째, 법령 등의 불필요한 불확정 개념, 규정의 흠결, 비현실적 기준 등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정비 ·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둘째, 법 · 제도상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합니다.
- 셋째, 법령 등의 입안 ·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구체화, 행정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개별 사안별로 사후적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는 구조적 부패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필요에 의해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08. 6. 부패영향평가 지침이 제정 후, 2016. 1. 동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 · 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 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 부패와 부패유발요인

■ 부패의 개념

● '부패'란 좁게는 공직자의 범죄나 직무관련 규정 · 규칙 위반행위를 뜻하지만 넓게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예산사용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미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부패 예시

- 뇌물수수, 향응제공
- 예산낭비
- 비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초래하는 행위
- 예산의 횡령, 유용, 편취
- 공 · 사간 이해충돌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 규정과 현실간의 관계와 부패유발요인

● 규정(법령, 자치법규 등)과 현실과의 관계는 크게 ①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② 규정이 존재하나 모호한 경우, ③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첫째, 규정이 있을 경우, 실효성이 없어 훈시규정에 불과하거나 규정끼리 상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규정의 무시 또는 과도한 해석 등으로 위법 · 부당한 법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둘째, 규정이 존재하나 모호한 경우, 규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과도한 재량을 가지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법 집행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여 형평성을 위반하거나 더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권한의 남용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 행위에도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절차규정의 부재로 업무성과가 저해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게 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근거규정의 부재로 예산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다양한 관계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을 규정상 부패유발요인이라고 합니다.

■ 규정과 현실간의 다양한 관계

Rule	Fact
존재	• 현실과 부합하고 실효성 있음 •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 없음 • 규정끼리 서로 상충
모호	• 해석상 논란 소지 - 현실에서 여러 가지 집행 양태를 보임 - 적극적 해결 모색 또는 방치
규정 없음	• 업무성과 저하, 문제 방치, 예산낭비 등 초래 - 문제인지 / 상황 / 외부 환경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28조제1항, 영 제30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현행 자치법규 · 행정규칙 ·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 · 점검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를 활성화 · 지원하는 등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 경험이나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 · 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 소관 법규에 대한 평가 · 개선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 · 운영하고,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의 경우 제 · 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 · 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며,

  ※ 제 · 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가능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합니다.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나 현행 행정규칙에 대해 부패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자치법규(조례, 규칙)

- 자치법규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 · 개정 자치법규안 또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제 · 개정 법령안	• 관계기관 협의단계 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평가 계획	•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 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평가	제 · 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 · 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평가 매뉴얼 개발 · 보급 · 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 · 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법규 평가	제 · 개정 자치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 · 보급 · 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 · 평가

5 부패영향평가 기준

- 부패영향평가 기준은 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는데 있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며 기준별 검토방법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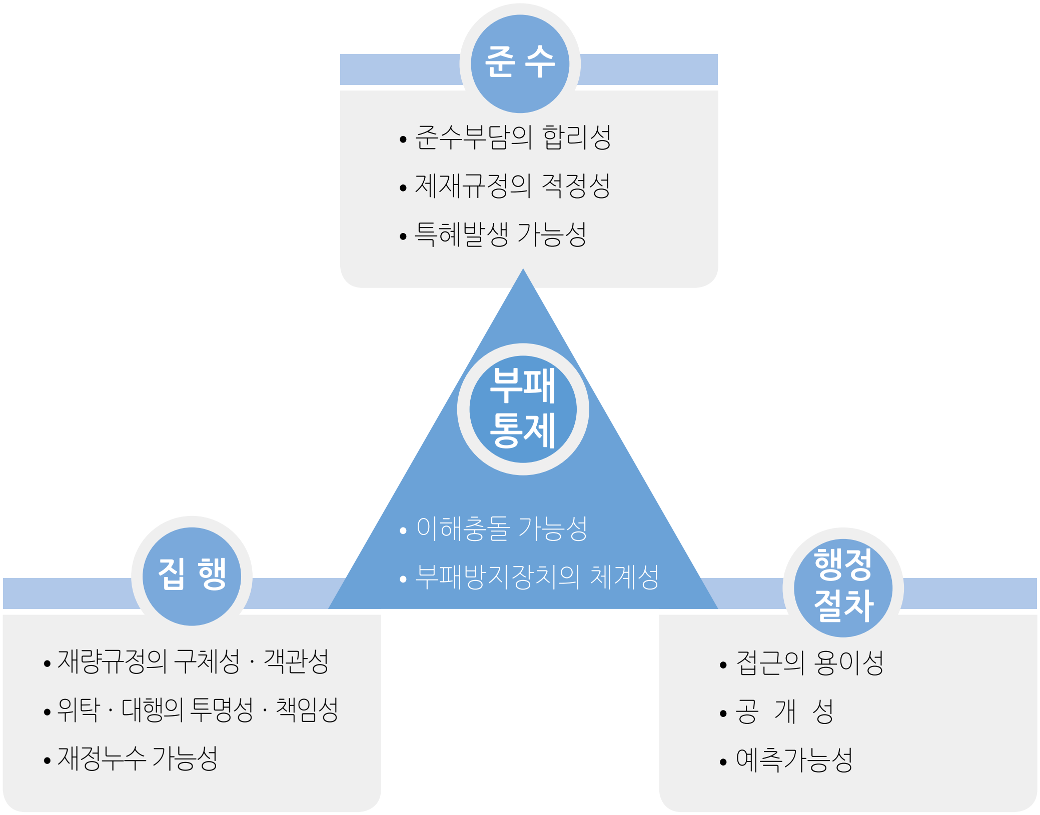

(1) 준 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 개 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제2장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1. 의의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 서식

1 의의 및 필요성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 · 규칙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 · 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 · 정비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치법규는 민원이 많고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경우 국민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둘째. 인 · 허가, 보조 ·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구조적이고 부패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패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부패를 발견하더라도 사후적인 처벌로는 부패의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 셋째,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규정이 자치단체 사무에서 공무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경우 공직자의 품성과 관계없이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을 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대상

■ 제 · 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 · 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시행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3 평가 제외 대상

●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 규칙) 등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예)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업무평가,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 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가능

4 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

- 입안주무부서는 제 · 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 (신 · 구 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 평가담당부서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종결될 때 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 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 자치법규(안) 평가 실시 : 평가담당부서

- 접수된 자치법규(안)이 평가 제외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입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평가 종료
- 평가담당자는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
- 필요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입법예고 기간 내(통상 40일) 평가 완료

■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 평가담당부서 · 입안주무부서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
- 입안주무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개선권고 취지 및 개선안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안)을 수정 · 반영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

〈 평가 업무흐름도 〉

단계	내용
1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	
2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 접수문서 관리 • 약식검토
▼	
3 자치법규(안),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 평가기한(입법예고 기간 내) 준수 • 평가제외 대상 여부 검토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	
4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 평가결과 통보 • 제·개정안에 반영

부패영향평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 rowspan="2">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td></tr>
<tr><td></td></tr>
<tr><td>자치법규 명</td><td colspan="4"></td></tr>
<tr><td>형 식</td><td>조 례</td><td colspan="2">규 칙</td><td>교육규칙</td></tr>
<tr><td>구 분</td><td>제 정</td><td colspan="2">개 정</td><td>현 행</td></tr>
<tr><td colspan="2">관련 법규 명</td><td colspan="3">(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td></tr>
<tr><td rowspan="2">지방자치단체</td><td rowspan="2">입안주무부서</td><td colspan="2">부서명(과 혹은 팀명)</td><td></td></tr>
<tr><td colspan="2">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3">입법일정
(예정)</td><td rowspan="2">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td><td>대상기관
(부서)</td><td colspan="2"></td></tr>
<tr><td>협의기간</td><td colspan="2">20 . . .부터 20 . . .까지(일간)</td></tr>
<tr><td>입 법 예 고</td><td colspan="3">20 . . .부터 20 . . .까지(일간)</td></tr>
<tr><td>의견수렴절차</td><td colspan="4">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td></tr>
<tr><td>별도 붙임자료</td><td colspan="4">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작성자</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전화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table>
<tr><td>자치법규 명</td><td colspan="3"></td></tr>
<tr><td>평가담당</td><td>(소속)</td><td>(직급)</td><td>(성명)</td></tr>
<tr><td>입안주무부서</td><td></td><td>통보(조치)일</td><td>20 . . .</td></tr>
<tr><td>관련조문</td><td>검토결과</td><td colspan="2">조치사항</td></tr>
<tr><td>○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td><td>○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td><td colspan="2">(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td></tr>
</table>

제3장

평가기준별 평가 방법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3)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2) 공개성
(3) 예측가능성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가능성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참고자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개 요

- 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주민 등에 부여하는 부담(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합니다.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유발되는 부패의 양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뇌물 공여,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상 의무의 위반·회피, 신고로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의 미신고 행태 등이 있습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이 자치법규·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② 부담금의 부과 등 직접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부담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고려했는지?

③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

■ 평가 요령

①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이 자치법규·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 자치법규에 준수부담의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부담을 준수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준수부담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법령에서 500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부과, 시장이 징수하도록 위임 **규정)** 조례에서 1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 : 상위 법령의 범위(500만원) 이내로 변경

② 부담금의 부과 등 직접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부담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고려했는지?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 까지 모두 검토합니다.

준수부담 예시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요구,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 등의 제한, 특정시설·특정행위의 금지, 공사시행 기간의 제한,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③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

- 준수부담의 완화, 다른 방법으로의 대체 등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일부에 국한된 문제 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불필요한 준수부담 예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제출 ▶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평가 사례

1. 신청 취소시 수수료 반환 의무화

평가 대상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검토 내용**
- 수수료는 신청이 처리됨을 전제로 하는 것
- 신청이 취소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목적성을 상실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임
- 지자체가 주민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하는 것으로 부패에 해당

● **개선 point** : **수수료의 부과 원인이 사라진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

개선 방안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2. 미납 주차요금 일괄 추정의 예외사항 규정

평가 대상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

● **검토 내용**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기본 1시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이자,
- 주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것
- 예외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

● **개선 point**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예외사항 규정**

개선 방안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가?	

규정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방법에 의한다.

1.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주된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주된시설에 따른다.

② 급수업종의 변경은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신고서 또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 현황 및 문제점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조례 제24조제1항)

● 건물 내 입점한 편의시설(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등)에 대하여 급수업종 적용 시 동일업종은 동일한 요율로 수도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 건물의 주된 시설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사용량이 동일하여도 병원에 입점한 편의시설은 급수업종이 공공용으로 적용되고, 일반빌딩에 입점한 편의시설은 급수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병원에 입점한 편의시설의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편의시설에 대하여 급수업종 적용 시 동일업종 간 수도요금 산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방법에 의한다. 1.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주된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주된시설에 따른다. ② (생 략)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주된 시설의 업종을 따른다. 2.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23조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주된시설의 대표자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규정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 현황

● 조례 개정(안) 제22조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납부했던 수수료를 허가신청의 취소, 과오납 등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 문제점

● 건축허가 취소 등 정당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행정규제

- 민원인이 납부한 허가 수수료를 신청취소 또는 과오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나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비용 징수(안 제22조제2항)

▸ 이미 납부 수수료를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을때에는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하여 준수 부담의 합리성 확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오납, 신청인의 허가사항 변경 및 철회, 공무원의 착오 등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수리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 5. ....

규정명 :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이행계획 확보 관련 준수부담 부적정
  - 투자이행계획 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설정가능토록 하였으나, 이행기간에 따른 보증금액 차감 규정이 없어 의무기간이 경과되어도 보증보험증권은 의무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하므로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 초래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증권 설정할 경우에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개 요

● 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위반자에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합니다.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에는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게 되며,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통한 처벌의 회피 시도를 하게 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적정한 제재 수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제재처분의 요건(기준)과 효과(수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③ 제재의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 평가 요령

① 제재처분의 요건(기준)과 효과(수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 제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의 요건과 효과가 담당자의 임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민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규정) ~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보조금 환수를 재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환수를 피하기 위한 로비 가능성 또는 보조금의 미환수로 인한 재정의 누수 발생
: 보조금 환수를 필수적 기속규정으로 개선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 3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하거나 강한 경우 그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ㅍ 니다.

③ 제재의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또는 과소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패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사회복지기관 원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규정)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 수준의 차이가 없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처분이 수반되어 부패방지 효과 미흡
: 중대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시에도 시설장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선

평가 사례

1. 과태료 부과규정의 구체화

평가 대상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의 부과 여부가 임의 규정이며,
- 과태료 액수도 점용료액의 5배 이내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
- 과태료를 회피하거나 액수를 줄이기 위한 로비 등 부패의 가능성 있음

● **개선 point :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세부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개선 방안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센터 지정기준 미달시 필요적 지정 취소

평가 대상	시장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최초 지원센터로 지정 시 인정 기준은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으로서 나중에 그에 미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
- 취소 여부를 시장의 재량으로 두는 것은 제재 회피를 위한 부패 유발 가능하며,
- 정책목적 달성에 적정한 제재규정이라 볼 수 없음

● **개선 point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예외사항 규정**

개선 방안	시장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규정명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조문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해야 함

-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조건 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여도 정산서 제출 시 대응투자 실적만 있으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 ·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 마련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규정명 :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 등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장이 센터의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실경영 및 직원의 비리 발생 시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의 제재장치가 미비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부실경영 및 비리 발생시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규정명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각 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
  4.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정안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의 위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바, 임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적절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정안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 마련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규정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 평가대상조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대전광역시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직무 수행의 청렴성) ⑥ 종사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편의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종사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허용하는 금품 등

⑦ 종사자는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 다른 종사자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지정함

-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선물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에 참작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 또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금품 수수에 대한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직무관련자 외에 직무관련공무원에 대한 규정과 직무관련공무원과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와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교육기관 종사자 행동강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table>
<tr><th colspan="2">금액
비위 유형 / 수수 행위</th><th>100만원미만</th><th>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h><th>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h><th>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th><th>1,000만원
이상</th></tr>
<tr><td rowspan="2">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td><td>수동</td><td>감봉</td><td>감봉·정직</td><td>강등</td><td>해임</td><td>파면</td></tr>
<tr><td>능동</td><td>감봉</td><td>정직</td><td>강등·해임</td><td>해임·파면</td><td>파면</td></tr>
<tr><td row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td><td>수동</td><td>감봉</td><td>정직·강등</td><td>해임</td><td colspan="2">파면</td></tr>
<tr><td>능동</td><td>정직</td><td>강등·해임</td><td>해임·파면</td><td colspan="2">파면</td></tr>
<tr><td row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td><td>수동</td><td>정직·강등</td><td>해임</td><td colspan="3">파면</td></tr>
<tr><td>능동</td><td>강등·해임</td><td>파면</td><td></td><td></td><td></td></tr>
</table>

■ 개선결과

제7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종사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윤리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3항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특혜발생 가능성

■ 개 요

- 공적 사무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차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지 판단합니다.

- 자치법규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개입하거나 용인할 소지가 있는 등 부패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구체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③ 특혜의 발생을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었는지?

■ 평가 요령

①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구체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 대상,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규정상 직접적인 혜택 또는 수익, 제3자에 대한 제재로 인한 상대적 이익 등 반사적 이익의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혜택 예시

입찰자격인정, 조사·검사 면제, 제출서류생략,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 감면, 우선배정,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인가·면허 등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특혜・이익의 내용・정도가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③ 특혜의 발생을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었는지?

- 수익을 부여하는 규정에 특혜를 방지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통제수단 예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보조금횡령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수혜자 이력관리를 통한 반복적 특혜 방지,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평가 사례

1. 공인중개사 선정에 관한 특혜 소지 제거

평가 대상	공공시설의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국가의 인증을 받은 공인회계사라면 기본적으로 위탁업무에 대해 검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구청장이 특정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검토보고서를 작성 의뢰하도록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 특정 공인중계사 또는 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
- **개선 point** : **공인회계사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문구 삭제**

개선 방안	공공시설의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 위탁의 대상 업체 · 기관 범위 확대

평가 대상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도 관련 면허업체가 충분히 위탁 수행할 수 있으므로,
  - 위탁 대상을 원 규정과 같이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사업에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특혜에 해당
- **개선 poin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면허업체에도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개선 방안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규정명 :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시의회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예술계 전문가
4.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현황

●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문제점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조에서는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제10조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상위 법령 및 위탁관련 조례 규정에 맞게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변경 검토 필요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예시
제10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규정명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4조(사용신청) ① 제3조의 이용대상자중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 실시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 사용신청은 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현황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3조)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 실시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용허가를 신청

-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

문제점

- 학생 단체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수련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해서만 규정에 명시하여 사용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단체에게만 사용 특혜를 부여할 우려

- 성수기, 공휴일 등 사용 희망자가 많아 콘도형 숙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공무원 등이 수련을 이유로 숙소를 사용하는 등 혜택을 누릴 가능성
  - 예약관련 담당자 등과 수련원 이용을 원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청탁 등 관행적인 부패가 유발

검토결과: 개선권고

- 개인 이용자에 대한 사용신청 절차 마련
  -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의 도입

개선예시

현행규칙	개선권고
제4조(사용신청) ① (생 략)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 사용 신청은 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	**제4조(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 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제3조에 따른 이용 대상의 개인 사용 신청은 매월 15일에 신청하는 정기예약과 정기예약 잔여분 및 예약취소 분에 대하여 수시로 신청하는 수시예약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수련원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련원 이용대상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개 요

- 재량행위의 판단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며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 · 객관적이지 않은 재량규정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자의적 행사 · 남용 또는 재량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동 등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재량판단의 요건 ·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② 재량의 범위는 적정한지?

③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있는지?

■ 평가 요령

① 재량판단의 요건 ·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규정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지자체에서 외국인 거주•정착 지원 대상을 정함 **규정)**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익숙하지 않은'의 정도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지원을 받기 위한 로비 가능성 등 내재 :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등 객관적 기준 제시하도록 개선

② 재량의 범위는 적정한지?

- 유사 법령•자치법규 등과 비교했을 때 재량의 범위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합니다.
- 상위 규정에 근거 없이 새로운 재량권을 생성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법령에서 위반행위시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 위임 **규정)** ~의 경우 시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상위법령에서 기속행위인 과태료 부과를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재량행위(임의규정)로 설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 '부과하여야 한다'와 같이 기속규정으로 개선

③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있는지?

- 재량권 행사의 구체적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등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을 통해 하위규정에서 정함, 정의규정의 추가를 통한 이해 보완, 이해관계의 참여를 위한 장치 마련(사전통지, 의견청취, 공청회 등),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등)에 대한 공개제도

평가 사례

1. 과태료 가중 · 감경의 구체적 범위 · 기준 구체화

평가 대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과태료 액수 경감의 상·하한 및 경감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이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액수 결정을 재량행위로 변화시키는 결과
- 처분권자의 자의적 결정 등 부패 유발 가능

● **개선 point :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기준과 상·하한액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 방안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의 구체화

평가 대상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감정평가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검토 내용**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라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결정의 요건은,
- 지나치게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
- 결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율 감경의 특혜 부여 등 부패 소지

● **개선 point : 모호하고 다의적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규정**

개선 방안	종업원 50명 이상을 도민 중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감정평가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 ·예규·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규정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조문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서울시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하수 재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마곡지구에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 시장은 하·폐수처리수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조례 제26조제1항)

문제점

-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 부과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요금 경감이 결정될 가능성
  - 요금을 경감 받기 위해 불법 로비 등 부패가 발생할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요금경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천재지변 지역,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등

개선예시

현행규칙	개선권고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3. 요금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 에서 특별히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요금 경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제1호~제3호까지의 사항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에서 특별한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2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준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을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 1제곱미터의 토지가격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황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별표 2,3의 시설물에는 설치기준에 따라 같은 부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 제21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토록 규정

-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 받고도 시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액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감액해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재량기준을 부가적으로 신설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금액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기존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 감액금액 토지가액은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개정 조례(안) 제21조제2항제3호) 규정
  -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제21조제1항 3호, 제21조제2항제3호) 라고 행정청의 재량기준 명시

■ 문제점

- 감액사유가 모호하고 추상적
  - 감액 및 설치비용을 결정하는 조문의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 없으며
  - "2분의 1범위내에서 감액"또한 감액 결정 범위 기준이 없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음
-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감액 받으려는 건축주 등과의 친소(親疏)관계 등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감액 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으며
  - 주차장 설치 비용과 감액조항 토지가액 산정지표가 통일되지 않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정근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은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50%로 규정하고 조문별 토지가액 산정기초를 일치하고, 토지가액비준표에 따라 토지가액 산정이 안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토록하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2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준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을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 (개정안과 같음)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이 안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개정안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안	개선권고
1~2. (생략) 3.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1~2. (개정안과 같음) 3.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개정안과 같음)

규정명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황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 · 군수에게 허가 · 신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는 관련법령 및 조례로 정한 표시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 신고 처리하고 있음.

■ 문제점

-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해 구체적 기준 없이 추상적 · 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및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가 · 신고 처리로 공정성 · 신뢰성 저해 우려

  - 민원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밝기 및 색깔로 광고물을 제작한 후 설치 허가처리 과정에서 불허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불이익 발생

    •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무리하게 허가할 경우 과도한 빛 공해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 및 민원발생 가능성

※ 환경부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2012. 2. 1. 제정, 2013. 2. 2. 시행

※ 서울시는「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에 조명기구의 용도별·지역별 구체적 설치기준과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 휘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생　략) ③·④ (생　략)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세부적인 기준은 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개 요

- 행정권한 ·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수탁 · 대행기관의 선정 ·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 · 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위탁 · 대행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 · 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② 대상기관 선정 등 위탁 · 대행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③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과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구비하고 있는지?

■ 평가 요령

① 위탁 · 대행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 · 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 위탁 · 대행의 대상기관, 요건, 근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지나치게 완화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위탁 · 대행의 요건 및 사무 등을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 · 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위탁의 대상 사무를 규정 **규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 위탁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예시 규정의 경우 대상 사무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탁으로 시장의 권한 남용 및 위탁사업을 하기 위한 로비 등 우려 : 위탁의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개선

② 대상기관 선정 등 위탁·대행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과 위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 특정 행정사무의 위탁 절차에서 특정 기관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정당한 평가 없이 장기간에 걸친 계약의 갱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계약을 갱신할 경우 평가·감독에 관한 규정과 계약 갱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미흡한 성과에도 계속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예상낭비 가능성이 있고, 계약 갱신 여부를 시장의 재량에 따름으로써 계약갱신을 위한 로비 가능성 존재 : 계약갱신의 제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계약갱신 여부 결정 등 관련 규정 개선 필요

③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구비하고 있는지?

- 위탁·대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과 협의·승인 등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수탁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제재수단과 지원금 환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수탁기관의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 **규정)** ~사용료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의 시설사용료는 주민의 부담, 기관의 초과이윤 등과 관련되어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이나, 예시 규정의 경우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통제가 어려움 : 사용료의 결정에 있어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선

참 고

《 민간위탁 기준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대행 관련 유의사항 》

- 업무의 대행 제도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또한 대행은 법률적 효과가 대행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대행의 결과를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법령 입안·심사 기준 中)

《 민간위탁·대행 절차 규정 》

- 민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 대 행 :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에 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필요

평가 사례

1. 수탁기관 모집 절차 규정 마련

평가 대상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라는 위탁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 비공개모집으로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 결정권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수탁하는 등 부패의 소지

● **개선 point : 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 규정**

개선 방안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 대상기관 선정 기준 · 절차 마련

평가 대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 **검토 내용**

- 전담기관을 지정하면서 특정 센터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위탁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기회 박탈 및 자격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과
- 서비스의 질 저하, 독점적 지정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 부패 유발 가능

● **개선 point :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 마련**

개선 방안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1)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예외의 경우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 가능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규정명 : 강원도 대관령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현황 및 문제점

- 야외음악당의 운영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 업체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간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해도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라는 막연한 기준에 의하여 기간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불법 로비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착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위탁기간 갱신을 1회로 제한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토록 하며,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안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원도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1. 융자금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반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기준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현황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은 재난기금의 융자 신청, 대출, 상환 등 융자금 관리에 관한 내용 규정

■ 문제점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적정성 부재
  - 융자 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시 지정 금고에 위탁 · 대행 하도록 규정(안 제6조) 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요구됨에도
  - 위탁 · 대행 업무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 검사 등의 해당 조항이 마련되지 않음

▶ 행정의 처리절차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위탁 · 대행 사무의 관리 · 감독 규정이 불투명한 결과에 따르는 부패 소지 존재 및 책임성 미확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부패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안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 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1. 융자금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반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지정금고의 융자업무 대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단, 위탁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연도 융자금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시 지정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상환,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규정명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현황

- 광주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문제점

- 제15조(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주무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탁 업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탁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안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호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재정누수 가능성

■ 개 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 ·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 · 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재정지원 대상 선정 ·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 · 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재정지원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 · 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② 지원 대상 선정 등 재정지원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 평가 요령

① 재정지원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 · 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 재정지원의 대상기관, 요건, 근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지나치게 완화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및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정지원 예시

지방자치단체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대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등

② 지원 대상 선정 등 재정지원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 주체, 방법, 제출 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 및 선정 결과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지자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규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 심사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시장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요건 또한 '내용의 적정 여부' 등 모호하여 시장의 자의적 특혜 부여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로비 등 부패 소지 : 사업별 보조금의 구체적인 교부 요건을 설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설치, 평가 기준의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필요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점검을 위한 보고의무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재정지원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성과 평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위법·부당한 신청에 대한 지원취소 근거규정 또는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에 따른 환수 등 사전·사후적 제재규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규정)** 시장은 ~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등 중대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환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부패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허위 신청에 의해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비율만큼 당연히 환수하도록 기속적으로 규정

평가 사례

1. 재정지원에 필요한 절차 · 내용 등 관련규정 정비

평가 대상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도지사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선정 요건, 절차,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
- 적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재정낭비, 로비를 통한 자의적 기업 선정 등 부패 가능성

● **개선 point : 선정 요건,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수립, 공개하도록 규정**

개선 방안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추후 신청제한 규정 추가

평가 대상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에 그칠 경우,
- 반복적으로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부담 없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패 발생 우려
- 재발방지 및 부패예방을 위해 선정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 **개선 point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자의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규정 추가**

개선 방안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0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2)]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3)]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4)]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5)]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6)]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7)]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2)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필요
3)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4)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규정명 :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 현황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모범사업체 선정·포상 및 모범사업체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 근거 마련

■ 문제점

● 모범사업체 선정기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지원 수혜를 목적으로 한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모범사업체 선정·지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며,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중단을 위한 자격철회 규정 등 마련

• 또한 위와 같은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고하도록 함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안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모범사업체는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6조제4항(선정의 취소)의 경우 중대한 위법사유로 선정의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정안처럼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지사는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규정명 :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시행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 · 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⑦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⑧ 선발된 장학생은 제9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⑨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 현황

●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가 '15.4.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함

■ 문제점

●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과 관련하여 ⑦항에서는 장학금은 연1회에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⑧항에서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하는 등 그 해석이 모호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 ⑨항의 장학금 지원을 정지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환수 등 조치사항이 없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모호한 조문 정리, 부당하게 지원금 지급 시 환수 규정 추가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⑦ (생략) ⑧ 선발된 장학생은 제9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⑨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⑦ (개정안과 같음) ⑧ (삭제) ⑨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2. (개정안과 같음)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 개 요

-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참여 및 의견진술 제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 주요 검토사항

① 참여, 의견진술 기회 등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지?

② 관련 규정이 충분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③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지?

■ 평가 요령

① 참여, 의견진술 기회 등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지?

-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위해 의견진술, 공청회, 청문회, 위원회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②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등 관련 규정의 충분성 및 실효성이 있는지?

- 국민의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토합니다.

-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합니다.

③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있는지?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합니다.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행정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평가 사례

1. 행정처분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평가 대상	군수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검토 내용**
- 도시구역의 지정·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의 경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며,
- 개발업자 등과의 유착 방지 등 부패예방에 기여

● **개선 point : 처분 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개선 방안	군수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규정명 :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7. (신설)

8. (생략)

제8조(자료 요구 및 제출 등) ①~④ (신설)

■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 현황

●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

- 아래의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 현장확인을 통한 감시 · 평가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공사
  - 5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 1억원 이상인 물품의 구매
- 사업 발주과정 · 계약체결과정 · 계약이행과정 등 3단계 평가 주관
-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 협의회 참여

■ 문제점

- 시민감시관의 직무가 대규모 공사 · 용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시 기능 미흡

- 시민감시관의 권한이 계약 업무 및 시정 · 감사 요구에 한정되어 있어 소극적인 역할 수행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민감시관이 시정 전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권한 확대 권고

■ 개선결과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10억원 -------------

   나. 1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용역 등

   다. (현행과 같음)

   라.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고충민원 공동조사·처리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5. 제18조에 따라 의뢰·요청된 감사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직권 조사활동 대상에 대한 조사
7.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
8. 대표 시민감시관의 협의회 참여

제8조(자료 요구 및 제출 등) ① 제7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시민감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의 감시·평가대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시민감시관에게 심의목록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민감시관은 제7조의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시민감시관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민감시관에 제출해야 한다.

2 공개성

■ 개 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됩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지?

② 관련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③ 공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지?

■ 평가 요령

①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지?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합니다.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 제공시기 ·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업 이전 · 이후에 걸쳐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선정 평가, 사업 성과 등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지방의회(광역)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의결 과정이 공개되지 않음 **규정)**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의결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국회의 경우 모든 소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의 의사과정이 전부 실시간 인터넷 중계 이루어짐) ▶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의 소위원회 의사과정 공개를 통해 예산·감사·조례 입법 등 지방의회 주요 사무에서의 주민에 의한 감시와 부패 예방이 가능 : 지방의회 소위원회 의사과정도 전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조례 제정

②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합니다.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합니다.

③ 공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있는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지방의회 의사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 **규정)** 지방의회(광역) 의사과정을 회의록공개 및 방청허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회의록 공개는 실제 의사과정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방청허가는 비교적 소수의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한계, 주민·외부전문가에 대한 설문결과 과반수 이상(53.5%)가 기존 공개방식이 미흡하다고 답변 : 인터넷을 통해 전 지방의회 의사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도록 개선

평가 사례

1. 보조금 지원 후 평가 결과를 인터넷 공개

평가 대상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에 대한 대외적 공개와 주민의 감시를 통해,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부패행위를 통한 평가 결과의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 **개선 point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개선 방안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규정명 : 부산광역시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조문

제8조(축제의 평가) ③ 축제평가단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및 문제점

- 축제 개최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평가의 객관성 ·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축제평가단의 평가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8조(축제의 평가) ③ 축제평가단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축제의 평가)**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명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평가대상조문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및 문제점

- 현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원회 운영 및 활동상황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책임운영과 투명성의 악화로 각종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으므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회의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7조(회의)**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규정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조문

관련규정 없음

■ 평가기준

- 공개성

■ 현황

-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감사 대상과 그에 수반되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사항 등 감사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임.

■ 문제점

-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나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보완 필요.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본 제정 조례(안)은 감사결과의 공개성 보완이 필요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통보서와 같이 “ 개선권고 ”통보.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00조(감사결과의 공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한 감사결과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예측가능성

■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지 판단합니다.

-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상 절차를 따를 경우 어떤 결과가 도출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를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① 신청시 기재사항, 요구자료, 신청기준 등 행정절차적 측면에서 관련규정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② 기준 ·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③ 제출된 자료, 자격 기준 등에 의해 처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 평가 요령

① 신청시 기재사항, 요구자료, 신청기준 등 행정절차적 측면에서 관련규정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소요 기간 및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 신청 규정 **규정)**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저소득농민)이 작성해야 하는 관계서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민원인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거나 담당자가 고의로 필요 서류를 누락하여 탈락시킬 수 있는 등 부패 소지 : 관계서류의 목록을 하위 규정 또는 [별표]로 정하도록 함

② 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 어떤 민원인이라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③ 제출된 자료, 자격 기준 등에 의해 처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 모호한 기준, 중의적 · 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 범위를 넘어 민원인의 결과 예측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향토유적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 **규정)** 향토유적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 ▶ 민간의 소유재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경우 처분 등이 제한되므로 소유자로 하여금 지정 여부의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라는 기준은 예측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지나치게 모호함 :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개선

평가 사례

1. 허가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평가 대상	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허가의 요건을 '일정한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 어떤 기준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허가 여부에 대한 결과 예측이 불가능
- 민원인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 준비 등 부담을 부여하고 허가 여부에 따른 자료의 보완 또는 사전 준비 등 예측의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함

● **개선 point** :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 방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2. 모호한 허가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평가 대상	담배자판기는 군 전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주로 이동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검토 내용**
- 담배자판기 설치의 제한 요건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 제시되었으나,
- 어느 지역을 뜻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
-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자의 예측과 달리 자의적 결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우려

● **개선 point** : **설치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 방안	담배자판기는 군 전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1.「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인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 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규정명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남은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 대로 계산하여 정산·반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현황

- 시장은 하늘공원의 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조례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조례 제10조)

■ 문제점

- 사용료의 반환 신청 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민원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하나
  - 반환 결정 후 지정된 기일 없이 막연히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반환 결정 후 반환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규정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18조의2(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설치확인서 내용 및 계측장치의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수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사용수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수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⑤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거나 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현황

- 규칙(안)은 중수도 시설 및 빗물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절차 규정으로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항임

문제점

- 개정 규칙(안)은 구비서류나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는 알수 있으나, 행정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의 보완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리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개선결과

(뒤쪽)

<table>
<tr><th colspan="2">처리 절차</th></tr>
<tr><td colspan="2">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td></tr>
<tr><td rowspan="2">신고인</td><td>처리기관</td></tr>
<tr><td>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td></tr>
</table>

규정명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조문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현황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 시설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사용허가 신청

■ 문제점

- 시설사용자의 허가 신청 기한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사용 허가서 발급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시설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용허가서 발급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권고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가능성

■ 개 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금의 선정 ·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평가하거나 심사위원회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해 심사하는 등 사적 이해에 의해 공적 이익이 훼손되는 부패행위를 예방합니다.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주요 검토사항

① 평가 대상 업무 관련규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②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③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었는지?

■ 평가 요령

① 평가대상 업무 관련규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 지원 대상의 선정, 성과의 평가 등 공무원 및 평가자 등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업무영역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상황)**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 임명·구성에 관한 규정 **상황)**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지원 대상·규모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의 거주 아파트 또는 본인의 친인척이 사장 등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을 하는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안건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 또는 심사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이해충돌상황 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장기간 재직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척 · 기피 · 회피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결정을 한 경우 공무원 의제를 통해 처벌하거나 위원에서 해촉, 차후 평가자로 위촉 제한 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장치 예시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만료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해촉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③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었는지?

- 제척 · 기피 · 회피 및 벌칙 부과 등 직접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청렴 서약, 회의자료 보관 등 간접적인 수단까지 고려하였는지 검토합니다.

평가 사례

1.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제외

평가 대상	○○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 교통국장, ○○도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4. 버스업체대표(협회·조합포함)나 운수종사자 대표

● 검토 내용

- 버스회사 등에 대한 지원 여부, 내용 등을 결정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 버스업체 대표나 운수종사자 대표 등 직접 이해관계자를 선정
- 위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를 의결하여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point : 위촉직 위원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를 제외

개선 방안	4. 버스업체대표(협회·조합포함)나 운수종사자 대표(이해관계인 삭제)

2.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마련

평가 대상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위촉직 위원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황
- 이 경우 통상 도지사·시장 등에 의해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나,
-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관련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

● 개선 point :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개선 방안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규정명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도시농업 소관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법 제정('11. 11. 22)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에 적합한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제6조의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관계 및 특혜 발생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연임 제한 및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신설
-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 시 해촉, 비밀누설 및 정보이용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도시농업 소관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1 ~3. (개정안과 같음)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규정명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및 금융기관에 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①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심의 ②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임

■ 문제점

- 기금운용관련 심의의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 저해 가능성 내재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수혜기관이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은 기금의 관리 · 운용 등의 업무수탁 기관이 될 수 있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 해당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및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내재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 · 신뢰성 미확보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위촉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금의 수혜기관 및 업무 수탁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규정 삭제

-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6조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제16조**④ (개정안과 같음)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2.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3.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4.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5. 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회계 전문가 6. 도내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임직원 7. 금융기관의 여신평가 전문가 8. 경제·금융 관련학과의 교수

규정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조문

제5조(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2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2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 · 방법 · 규모 · 내역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 조례 제정(안) 제5조는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

■ 문제점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위원회는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 · 방법 · 규모 · 내역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안 제6조제2,3호) 기능을 수행하고,

-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공급식의 지원은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물 지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안 제16조제3항, 안 제24조제3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심의 · 의결 사항에 대한 위촉위원 등의 제척 · 기피 · 회피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 위원회 심의사항의 집행(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로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안 제8조) 상태이며,

- 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중 경비 지원 대상 · 방법 · 규모 · 내역 및 생산기반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객관적인 심의 · 의결 요구됨에도,

-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 · 의결에 공정성을 해치는 등의 부패 소지 존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마련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대한 위촉해제 규정** 마련으로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를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 하는 것이 적합지 않을 경우 면직 또는 해촉 기준마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4.(생략) 〈신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4.(개정안과 같음) 5. 제00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개 요

●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 관련 부패사례가 있는지?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 부패방지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 평가 요령

● 관련 부패사례가 있는지?

- 평가 대상 자치법규 관련 업무 및 타 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을 검토합니다.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부패방지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경우나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부패방지장치 예시

부패방지 장치	세부사례
민간 참여 확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내부감사에 참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8] 및 감독기관의 회계감리
	계약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여 업무처리 과정 모니터링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 필수 참여
내부 행동강령 강화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제한, 골프 금지
	공무원 가족의 산하기관 채용 제한
	임용 전 재직 업체 관련 직무 수행 금지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 간 사적 접촉 제한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부패신고 대상 확대(알선·청탁, 업무정보 유출, 전관예우 등)
	신고보상금·정기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장치 운영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자재 이력관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통한 계약과정의 모든 서류 전자화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작위 선정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평가 사례

1.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대상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신설

● **검토 내용**

-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부실과 추진·관리 부실로 재정누수 심각
-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방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저감

● **개선 point : 사업추진 타당성 사전 검증절차 신설과 실시협약을 사업부서와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 방안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별표 생략〉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규정명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조문

관련 규정 없음

■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시민혈세 우려

〈 관련 사례 〉

-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이 문제…어려운 재정에 엎친 데 덮친격(10년간 민자사업 손실 보전에 세금 4조 7,000억 투입, ○○비즈, ′15.9.9.)
- △△시가 지난달 받은 종합감사에서 산림사업 보조금 환수 소홀 등의 부적정을 이유로 시정14건, 주의 8건 등 총 49건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경제, ′15.9.11.)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관리 부실로 인한 재정누수가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하여 민자사업 사전검증 및 협상안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저감토록 하고

- 민간투자사업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협상전략을 주도하고 현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하는 재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 민자사업 관리강화 조항 신설 ☞민간투자사업관리조례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 현행 민간투자사업 추진 프로세스에서 ① 사업추진 타당성 사전 검증 절차 신설 ② 실시협약 협상을 당초 사업부서 → 사업부서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동으로 협상실시토록 변경 ③ 협약서 최종검토 절차 신설토록 변경하고 - 변경된 사업추진 프로세스(절차)를 조례상에 명문화함(별표1)

규정명 :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조문

관련 규정 없음

■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 부패행위자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 등 부패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2차 부패행위 발생 가능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윤리의식 제고방안 마련

■ 개선결과

제9조(부패행위자의 처리) ① 시장은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1)]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2. 부과·징수 업무[2)]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o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o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o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o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o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감면	o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o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제기	o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o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o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o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체납처분	o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3. 보조·지원 업무 3)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 · 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 정산· 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 5)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6](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7](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6. 단속·점검 업무[8)]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기피·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제4장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사례

1. 현행법령 평가

-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2. 제·개정법령 평가

-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법령 평가]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I 추진 배경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투명한 사회)
- 2016년도 국민권익 정부 3.0 과제(투명한 정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 · 운영

● 지자체의 경우 1999년부터 민간위탁[1] 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간위탁사무수 및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수는 ′15년 9,556건으로 추정(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예산규모는 (′05년) 5조 1,647억원 → (′14년) 12조 2,777억원으로 증가(행자부 재정고)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자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여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위탁 계약, 위탁료 산출, 관리 · 감독 분야에서 부패유발 및 재정누수 요인이 내재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하지 못하고,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뉴스, ′16. 2월]

➡ 이에,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

1)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Ⅱ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1. 추진경과 및 현황

■ 추진경과

- ′16.1~3월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법령조사
- ′16.4~6월 공영주차장 관련 법령 및 현장 실태 조사
- ′16.7~8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련 조례 전수조사(서면조사)
- ′16.8~9월 법률 및 관계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 ′16. 10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마련

■ 실태조사 개요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16.4월 ~ ′16.6월 중
  - 대상기관 : 3개 지자체(광역 1, 기초 2)
  - 조사방식 : 자료 조사 및 현장 면담(공영주차장 소관 부서 및 지방공사·공단 등 담당자)

- 서면조사
  - 조사기간 : ′16.7.18. ~ ′16.8.19.(1개월간)

    ※ 조사통보 및 지자체 자료 제출(7.18.~7. 29.) → 제출자료 보완 및 통계 작업(8.1.~8.19.)
  - 대상기관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 조사방식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관련 조례 전수조사(′15.12.31.기준)

■ 주차장 조례 및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15년 기준)

●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중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235개(광역 9, 기초 226)

➡ 주차장 조례가 있는 23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또한, 230개(광역 7, 기초 223) 지자체가 14,57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 중, 그 중 176개 지자체가 6,108개소를 위탁운영 중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지자체 현황>

합 계 (단위: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	7	1	1	1	1	-	-	-	1	1	-	-	-	-	-	-	-	1
기초	169	25	16	8	10	5	5	5	-	30	13	6	11	3	4	14	14	-
합계	176	26	17	9	11	5	5	5	1	31	13	6	11	4	4	14	14	1

- 위탁운영 중인 6,108개소 중 4,369개소(71.5%)는 지방공사 · 공단 직영, 1,256개소(20.6%)는 지자체에서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 483개소(7.9%)는 지방공사 · 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고 있음

※ 전체 723,238면 중 위탁 중인 주차면수는 368,108면임(50.9%)

<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주체별 주차장 수>

<table>
<tr><th rowspan="3">합 계
(단위:개소)</th><th rowspan="3">지자체 직영</th><th colspan="4">위 탁</th></tr>
<tr><th rowspan="2">소계</th><th colspan="2">지자체 ▶ 공사·공단(4,852)</th><th rowspan="2">지자체 ▶ 민간</th></tr>
<tr><th>공사·공단 직영</th><th>공사·공단 ▶ 민간</th></tr>
<tr><td>14,573</td><td>8,465</td><td>6,108</td><td>4,369</td><td>483</td><td>1,256</td></tr>
</table>

2. 문제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 현장 ·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공영주차장 문제 파악
- (계약 및 절차) 수탁기관 선정, 갱신계약 및 평가 등
- (위탁료 산출) 위탁료 산출 여부, 산출 기준 및 방법 등
- (관리·감독)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제재 등

● 관련 법령[2] 의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공영주차장 위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직적 분석
- 계약방법, 위탁료 산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평적 분석

법령 체계		주요 내용
법령	법 률 (주차장법)	• 주차장 정의,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위탁)관리 •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자치 법규	주차장 조례	• 위탁의 근거, 선정방법, 계약, 위탁료 산출 • 위탁 기간, 관리감독, 계약 해지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계약방법,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공유재산 조례	•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계약 갱신 및 평가, 관리·감독

➡ 부패영향평가는 공영주차장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
(필요시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조례 등 관련 사항과 연계하여 보완·정비)

2) 이하 에서는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지칭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군)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는 「주차장 조례」, 「△△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조례」, 「△△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민간위탁 조례」라 함

참고 공영주차장 위탁 제도 및 관련 법령

■ 개념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공영주차장 설치 · 운영

● **(설치)** 소관 행정구역내에 지자체장이 특별회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 **(운영)**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 · 공단 직영 및 민간에 위탁 운영

※ 수탁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경쟁, 제한 및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 지자체의 장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접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자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5조)

■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소관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별 자치법규(조례)에 규정

- (기본법)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 * 주차장 정의, 주차장 설치·관리, (위탁)운영 등
- (자치법규) 주차장 조례, 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 조례 (지자체)
  - * 위탁근거, 위탁기간 및 연장, 위탁료 산출, 주차요금 징수방법, 지도·감독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지방공기업법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1. 위탁료 관련 규정의 객관성 미흡 1-1 위탁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위탁료 산출 1-2 임의의 기간에 위탁료를 산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1. 위탁료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1-1 위탁료 산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투명성 제고 1-2 정기적인 위탁료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2. 갱신계약의 투명성 미흡 2-1 갱신계약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2-2 자의적 평가방법 결정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도 저하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1 갱신계약의 평가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가능성 사전 차단 2-2 갱신계약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3. 부실한 관리·감독에 따른 위탁관리 부실화 3-1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위탁관리 부실화 초래 3-2 구체적 제재규정 미흡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곤란	**3.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3-1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의 실효성 확보 3-2 구체적인 제재규정 마련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4. 수의계약 근거 불명확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4-1 선정방법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시비 발생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4-1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혜 시비 해소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개선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위탁료 산출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관련 보도사례

- 지자체마다 위탁료 산정기준이 제각각이며, 일부 지자체는 휴일도 위탁료에 포함, 위탁료 산출기준에 영업일수, 영업시간 등을 적용하면 위탁료의 60%가 거품으로 풀이,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 마련 필요 [○○일보, '14.1월]
- △△의원은 "△△공사가 3년마다 재위탁하는 유료주차장 11곳은 수입이 최소 6억6천만~8억6천52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2013년 수탁단체들이 납부한 임대료는 5천300만원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인 계약방식 때문에 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일보, '15. 1월]

■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위탁료 산출을 위한 객관적 기준 부재**　▣ **조례 미제정 111개 지자체(47%)**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중략)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비영리공익 법인의 경우	(생략)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	(생략)
마을공동체 , 비영리자원 봉사단체	(생략)	**군수가 정하는 금액**	(생략)
기타의 경우	(생략)	입찰가격	(생략)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1 위탁료 산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투명성 제고

■ 현 황

●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47%(111개)가 위탁료 산출에 대한 규정 없이 위탁금액을 임의로 산출

• 지방공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4,369개소)은 수입과 지출이 100% 파악되고 있으나,
• 민간업체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1,739개소)은 25%(435개소)만이 수입과 지출이 파악되고 있고, 그 중 149개소만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위탁료가 산출되고 있음(′16년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탁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124개(53%) 지자체 중, 15개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등과 같이 모호한 기준을 사용

• ○○시는 ′15년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근거로 무상 위탁(′16년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감면 · 면제규정이 있는 83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 또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표현을 사용

• 제0조(관리수탁금 금액 및 납부방법) ①생략 ②관리수탁금은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군 조례)

■ 문제점

● 위탁료 산출기준이 없을 경우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위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산출될 개연성이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 과소 산출로 재정누수, 과다 산출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발생 우려

- 또한, 감면비율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시장이 정할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

■ 개선방안

●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탁료 산출기준 명시

- 예상수익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 제시
  * (수입항목)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을 고려
  * (지출항목)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 등 제경비 등을 고려
- 자의적으로 표현한 감면사유와 비율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참고1] ○○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해당 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없을 시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 공시지가 금액에 ○○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50/1000)을 적용하는 방법
2. 해당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
   단, 회전율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주차장 가동율{(주차면수×월정금액×12월)÷(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365일)}을 곱한 것으로 한다.

[참고2] 위탁료 산출 사례(○○군)

- **(산출방법)** ○○군 현장조사와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분석
  - (현장조사) 년 2회(7일/회) 현지 출장하여 일정 시간(3~4시간)동안의 차량 대수 및 주차요금 등 수입금 파악·분석
  - (제출자료)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
    ※ 수입근거(시간당 주차요금, 월정주차요금 등), 지출근거(인건비, 수탁료, 운영비, 사업장관리비, 제경비 등)
- **(결과분석)** 현장 조사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주차장 여건과 관리 측면에서 위탁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
- **(위 탁 료)** 평균치 수입금(현장조사 2회 및 제출자료의 평균) - 해당연도 지출액 × 비율

※ '16. 7월 권익위 서면조사 시 제출된 ○○군의 '2015년도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추진계획'을 기초로 재구성

1-2 정기적인 위탁료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현황)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위탁료 산출 주기를 명시한 지자체는 단 1개**[3)]

- 지자체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1,256개소) 중, 52%(651개소)가 조례(주차장 조례 외 포함)에 근거 없이 매년 위탁료 산출

■ **(문제점) 위탁료 산출 주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부실한 위탁료 산출로 재정누수 또는 수탁기관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위탁기관이 근거규정 없이 임의의 기간에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에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 소지가 있음

  *위탁료를 매년 산출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인 수입·지출 파악이 어렵고, 수입·지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위탁료가 산출될 우려

■ **(개선방안) 위탁료 산출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위탁료를 매년 산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정한 위탁료가 책정되도록 개선

[참고]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③ (생략)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 중략 ------,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3) 매 회계연도 마다 위탁료 산출

1-3 주차장 조례 [예시]

<table>
<tr><th>현행</th><th>개선안(예시)</th></tr>
<tr><td>〈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선정 방법</th><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th>납부 방법</th></tr>
<tr><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r><td>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td><td>(생략)</td><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td>(생략)</td></tr>
<tr><td>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td><td>(생략)</td><td>계약금액</td><td>(생략)</td></tr>
</table>
</td><td>제00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0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개월마다 ○○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td></tr>
</table>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이하 ‘개선안(예시)’도 같음]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관련 보도사례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뉴스, '16. 2월]

■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갱신계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부재**

▣ **조례 미제정 181개 지자체(77%)**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⑤ (생략)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1 갱신계약 시 평가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가능성 사전 차단

■ 현황

● 갱신계약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등 평가근거가 있는 지자체 23%(54개)

<갱신계약 시 평가규정 운영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54, 23%)			
		주차장 조례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조례	기타
235	181(77%)	1	21	30	2

● '10년~'15년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77% (378건)가 평가절차 없이 자의적 ·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 연장

<'10 ~ '15년 갱신계약 시(공사·공단 제외 민간) 평가 실시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건)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소계	494(100%)	80	81	83	82	83	85
평가 실시	116(23%)	18	19	18	19	21	21
평가 미실시	**378(77%)**	**62**	**62**	**65**	**63**	**62**	**64**

■ 문제점

● 갱신계약 시 평가절차 없이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 해당업체는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반복될 경우 특혜 발생 소지

- 또한, 수탁업체 입장에서 갱신계약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탈락 시 행정의 투명성 결여를 문제 삼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갱신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근거와 기준 마련

-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갱신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간 계약연장 등 특혜소지 차단
- 관리·운영능력, 위탁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한 수탁업체의 예측가능성 제고

•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계약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결정(5년 이내에 2회 이상 가능)「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공사는 ′15년 계약이 종료되는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별다른 평가절차 없이 시의 재위탁 승인만으로 2년간 연장계약(′16년 6월 권익위 실태조사)

2-2 갱신계약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 현황

● 갱신계약 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주차장 조례 외 포함)가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17%(39개) 이며,

- 이해충돌방지 조항 7%(17개), 외부위원과반수 의무 조항 10%(24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없음	규정 있음(39, 17%)							
		이해충돌방지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인원 하한선		위원장 공무원배제	
		○	×	○	×	○	×	○	×
235	196	17(7%)	22	24(10%)	15	31(13%)	8	6(3%)	33

● '10년~'15년 2회 이상 갱신계약 시 평가를 실시한 116건을 분석한 결과 91%(106건)가 평가위원회 구성 없이 자체평가로 실시

<'10 ~ '15년 갱신계약 시(공사·공단 제외 민간) 평가단 운영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건)	소계	'10년	'11년	'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16(100%)	18	19	18	19	21	21
위원회 평가	10(9%)	2	1	2	2	2	1
자체평가	106(91%)	16	18	16	17	19	20

■ 문제점

● 평가방법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평가시마다 달리 정할 경우, 자의적 평가방법 결정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도 저하 및 특혜발생 가능성 내재

- 평가위원회의 내 · 외부 위원 구성 비율, 자격요건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곤란

■ 개선방안

● 갱신계약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며, 다른 조례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활용도 가능

- 평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등
  - 위원회 구성 시 자격요건, 내·외부 위원 구성 비율 명시,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으로 평가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

[사례] 공영주차장 평가 사례(○○시)

- **(평가개요)** 위탁주차장 지도·감독 계획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 주차편의 증진을 도모
- **(평가기관)** ○○시 시설관리공단(주차장담당부서)
- **(평가주체)** 평가실무위원회 7명(공단 2, 시 2, 고객모니터 3)
- **(평가분야)**

구분	주요내용
친절도	• 불친절 민원, 주차요금징수 투명성, 성실도 등
관리체계	• 계약 및 지도 방침 이행, 지적사항 조치결과, 민원발생시 처리결과 및 개선의지
	• 관리 투명성, 주차관리원 지도감독 등

- **(평가결과 활용) 세부기준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50점 이하) 등**

※ '16. 7월 실태조사 시 해당 시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내용 재구성

※ 공유재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근거로 적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갱신계약의 판단근거로 활용한 사례임

2-3 주차장 조례 [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7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현행	개선안(예시)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행	개선안(예시)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개선안(예시) 제7조 제2항 후단의 ‘별표’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기준 등을 정성·정량지표로 구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갱신 여부 기준 등을 마련

3.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관련 보도사례

- △△구청이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을 '19년 5월까지 총 21년 6개월로 연장, 자체 감사결과 협약 변경 상 문제와 '97년~2012년까지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위탁운영 전반에 관리·감독 소홀 시인 [OO뉴스, '15. 4월]

■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부재**

▣ **조례 미제정 116개 지자체(49%)**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생략)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3-1 구체적 관리 ·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관리 부실화 방지

■ 현 황

●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 · 감독권을 규정한 자치단체는 51%(119개)에 불과

- 또한, 관리 · 감독 규정이 있는 119개 조례 중에서도 세부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는 33개에 불과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근거 조례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119, 51%)		
		주차장조례	민간위탁조례	기타
235	116(49%)	26	75	18

● '15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중인 176개 지자체의 관리 · 감독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5%(79개)의 지자체가 점검실적이 전무

- 또한, 97개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60개 지자체가 친절도 · 복장상태 · 서비스 품질 등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

<최근 3년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년도	합계(개)	정기	비정기	미실시
2015	176	49	48	79
2014	171	46	42	83
2013	171	46	39	86

* 계획수립에 의한 실적만 인정

■ 문제점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규정 불비(116개 지자체) 및 형식적 점검 등으로 인한 위탁관리 부실화 초래 및 부패가능성 증가

-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활동이 법적 근거 없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될 경우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관리 · 감독이 미흡으로 수탁재산의 수입 · 지출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위탁료 산출이 어려워 위탁료 산출의 부실 초래

• 대부분 시설물 관리상태, 친절도, 복장상태, 요금표 적용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환경정비, 부당요금 징수 여부, 수익·운영시간·부당징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
• 일부 지자체만 주차장 수입·지출 상황, 분기별 운영실적 등 실질적 위탁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16.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 · 감독 규정 마련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 근거, 방법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 · 감독의 실효성 확보
  • (예시) 현장 출입 · 조사, 주차관제시스템, 장부 등 확인 · 조사 및 위법 · 부실 운영에 대한 시정 · 주의 · 개선 요구 등
- 수탁재산 관리상황(수입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의무 규정

  * 보고 주기와 보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

3-2 구체적인 제재규정 마련으로 수탁업체의 책임성 확보

관련 보도사례

• △△공사는 총 12개의 공영주차장을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는 십여 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 이들 수탁 민간단체들은 △△시와 △△공사가 주차장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세부자료 없이 총수입액과 총지출금액만 적어 제출하거나 대부분은 아예 제출을 거부 [△△뉴스, ′15.4월]

■ **(현황)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해지·해제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는 54개(23%)에 불과**

- 사유도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

■ **(문제점) 수입·지출 상황 보고 거부, 위탁료 미납 또는 지연 납입 시에도 제재가 미흡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곤란**

- ′13년~′15년 기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8건이며, 대부분 시정, 주의, 경고 등에 그쳐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미흡

■ **(개선방안) 수탁업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지(또는 해제) 조항 마련**

- 관리상황 보고의무 거부(지연 보고, 거짓 보고 등), 위탁료 지연 납입 시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위탁료 횡령, 미승인 주차권 발행, 운영시간 외 영업,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의무 위반, 관리소홀 지적 개선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지자체 특성 및 실정에 맞춰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세부절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참고] 계약 해지(또는 해제)를 규정한 조례

• ○○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 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계약의 해제)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3 주차장 조례 [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현행	개선안(예시)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00조 제00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관련 보도사례

- △△공사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중 10개 주차장에 대한 재계약을 관행적으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이는 계약방식과 임대료를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심 행정용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 [○○일보, '15.1월]

■ 평가대상 조문 1 : 주차장 조례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수의계약 규정**

▣ **수의계약 근거 조례 제정 137개 지자체(58%)**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군수가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 평가대상 조문 2 : 주차장 조례

▣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에 따라 ○○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 · 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4-1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혜 시비 해소

■ **(현황) 주차장 조례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 지자체는 137개(58%)**

- ′15년 기준 민간업체에 위탁중인 공영주차장 중 371개소(21%)가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방법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합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기타
합계(개소)	1,739	1,032	298	8	371 (21%)	30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1,256	676	248	6	301	25
지방공사·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483	356	50	2	70	5

■ **(문제점) 조례에 수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특정 업체와의 장기 계약, 특혜 부여 등 문제 발생**

•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 수탁업체로 선정하는 등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16.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수의계약 근거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명시**

- 수의계약 근거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특정업체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수탁기관에 선정될 경우 투명한 위탁료 산출이 어려워 재정누수 가능성이 높고, 다른 업체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민간위탁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 초래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개선

•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08년부터 1년 단위로 '13년까지 △△시장 번영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면서 번영회가 제3자에게 5년 동안 재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해마다 공영주차장 지도·감독할 때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고, '13년 9월 번영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때 재위탁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탁한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13년 ○○시 감사결과보고서)

■ (현황) 주차장 조례에 재위탁 규정이 있는 지자체는 11개

- 10개 지자체는 재위탁 금지, 1개 지자체는 재위탁 허용

■ (문제점) 법령에 근거 없이 재위탁 할 경우 계약, 위탁료 산출, 관리·감독, 평가 등 위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위탁관리 전반의 부실 초래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금액을 당초 위탁금액 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약할 경우 최초 수탁자의 부당한 소득 발생 및 감독기관과의 유착 발생 우려

■ (개선방안) 「주차장법」에 위배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 개선

* 재위탁에 따른 재정누수 우려, 권한과 책임 소재 불분명, 관리·감독의 부실화 등을 방지

공영주차장 재위탁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재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재위탁을 위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 행정권한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설정되는 것(행정권한 법정주의)으로 재위탁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주차장법은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전문가 자문 결과

- 제3자에 대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 재위탁조항이 없으면 엄격하게 해석하여 재위탁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또한 제3자 재위탁의 요건이 상위법에 규정됨이 없이 각 지자체 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되는 것은 결국 지자체 행정편의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에 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4-3 주차장 조례 [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의견[4)]】 지방공사·공단에 민간위탁 수탁자 지위 부여

■ 관련 조문 :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현황

- 「주차장법」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85개 지자체가 지방공사 · 공단에 위탁하여 수행 중
- 174개 지자체가 지방공사 · 공단에 대한 위탁을 '민간위탁의' 범주에서 배재하도록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의견

- 지방공사 · 공단에 대한 위탁업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전문가 자문 결과

- 현재 '민간위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동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이때 '민간'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범위에는 사적 법인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특수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권고사항은 아니며, 업무추진 시 참고사항 임

V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 대상기관 : 235개 지자체(주차장 조례가 있는 지자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대상	조치기한
1. 위탁료 산출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조례	235개 지자체 중 해당 지자체	ʼ17. 11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ʼ17. 11
3.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ʼ17. 11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ʼ17. 11

※ 조치기한 설정 : 조례 개정 1년 이하, 규칙 6개월 이하

※ 관련 규정개선은 주차장 조례(규칙)를 기본으로 하되, 민간위탁 조례(규칙), 공유재산 조례(규칙) 등의 연계성과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

개선권고(안) 조치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상 지자체
서울특별시(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17)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9)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인천광역시(11)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6)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6)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31)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도(18)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11)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15)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라북도(14)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22)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23)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18)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1)	제주특별자치도
계	235개 지자체

※ 조치대상 기관은 「주차장 조례」가 있는 지자체이며, 세부 개선권고 과제별 조치대상 여부 결정은 추후 지자체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확정할 예정임

붙임 1. 용어의 정리

•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달라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본 평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 (공영주차장)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

▶ (민간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재위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

▶ (갱신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과 계속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
※ 지자체에서 연장계약, 재계약, 재위탁 등의 용어로 사용 중

▶ (위탁기관) 자기의 권한(책임)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

▶ (수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재위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재수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무를 재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붙임 2. 자치법규 개정시 유의사항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본 평가서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예시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이 「민간위탁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주차장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주차장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주차장 조례」에 관련 근거를 명시

※ 관련 조례의 규정이 본 개선권고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당 조례를 개정

▶ 본 평가서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예시하였으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법적 체계에 맞춰 관련 내용을 ‘규칙’등에 규정할 수 있음

붙임 3.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안내사항

● 공직자등이 아닌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붙임 4.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 안내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 법 제31조에서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붙임 5. 「주차장 조례」 개선 표준안

〈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장의 표지)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설〉	**제6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선 표준안(예시)</th></tr>
<tr><td>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선정방법</th><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th>납부방법</th></tr>
<tr><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r><td>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td><td>(생략)</td><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td>(생략)</td></tr>
<tr><td>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td><td>(생략)</td><td>계약금액</td><td>(생략)</td></tr>
</table></td><td>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개월마다 ○○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td></tr>
<tr><td>제7조 〈신설〉</td><td>제7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td></tr>
</table>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신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9조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 <신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신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3조 〈신설〉	**제13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신설〉	**제14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 한다.
제15조(주차장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 처분)	〈현행과 같음〉

[제·개정법령 평가]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Ⅰ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Ⅱ 추진경과

단계	내용
부패영향평가 요청 태백시 → 국민권익위원회	•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요청(2015. 10. 15)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등 제·개정 조례· 규칙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가능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및 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 태백시	• 평가결과 통보(2015. 11. 9.)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1. 수탁자 선정 관련 규정의 투명성 미흡	1.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 마련
2. 자의적 위탁기간 연장으로 특혜발생 가능성 내재	2. 연장 규정 명확화 및 평가를 통한 위탁운영 내실화
3.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미비	3. 관리·감독 및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Ⅳ 세부평가내용

■ 평가대상 조문

제9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대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 하여야한다. 단,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위탁운영비로 지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비로 지출할 경우 시는 위탁운영비에서 전대 수익을 감하고 그 차액을 지원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누수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 태백체험공원의 일부 재산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하는 내용을 규정

■ 문제점

[일부 개정사유]

- 태백시 소유 태백체험공원을 관리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검토 의견]

- 협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나, 태백체험공원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 방법·절차 및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환수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추후 조례 개정 시 보완 필요

[세부 의견]

> **제9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험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체험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2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정·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규정 미흡

- 수탁자 선정 시 전문가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선정하여야하나, 본 조례는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미비

  ➡ 지자체장이 수탁자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우려

② 자의적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수탁자에 특혜 부여 가능

- 지자체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존수탁자와 무기한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기존수탁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부패발생우려

③ 관리위탁 평가규정 부재로 부적격자 선정 우려

- 위탁계약 및 갱신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나, 종합평가 미실시로 수탁자의 전문성 판단 곤란 및 부적격자 선정 시 관리 부실 등 초래

④ 위탁운영비 등 허위 · 부정 청구 · 수령 시 환수제도 미비

- 수탁자가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예산낭비 및 부패유발 우려

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반 및 위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개선 및 시정 조치에 불응했을 때
3. 운영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수탁자 허위 · 부정서류 제출에 따른 위탁취소 요건 부재

- 관리업체가 거짓이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선정될 경우 위탁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부정 서류 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곤란

⑥ 위탁 취소 시 의견 청취절차 미비

- 관리업체의 잘못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청취절차 없이 직권 취소가 가능하여 재량권 남용 우려

⑦ 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규정 미흡

- 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관계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으로 조사 검사할 수 있음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 편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시도 등 부패행위 발생 우려

■ 검토결과: 개선권고

①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

-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탁자 선정 기준 예시

- 위탁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재정·책임능력이 있고, 관련 전문성을 갖추는 등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함.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 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제○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특혜 차단 등 부패근절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연장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수탁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내부공무원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①시장은 수탁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 . . . ⑤심사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유사사례**

- 서울시:재계약 시 신규 위탁사무 선정 및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수탁운영능력 평가

③ 수탁자선정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위원회 위원은 체험공원 운영업체 선정, 계약연장 등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수탁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받고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부정 · 불법 위원을 사전에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여 위원회 심사 · 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마련

-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마련
-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마련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정안	개선권고안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위탁계약 연장 규정 명확화로 부패유발요인 차단

-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운영 상태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통한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 지양
- 계약연장(재위탁)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화되는 관행적인 계약 연장을 지양하기 위해 일정 횟수 경과 시 재모집 공고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재 선발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③시장은 체험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2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③위탁기간은 ○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필요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2. (필요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④ 제3항의 단서와 같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관리운영 종합평가결과 연계를 통한 부실운영 방지

-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태를 종합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와 위탁취소, 위탁기간 연장 심사 연계, 수탁자의 종합평가 관련 세부평가 항목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평가를 회피·거부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위탁취소 등 제재수단 신설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종합평가 등)**①태백시장은 위탁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태를 종합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는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전문성,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 .

⑥ 종합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 지자체 및 수탁자 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운영 수탁자 퇴출 유도

ⅰ) 건축·소방·가스 등 항목별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 공개
ⅱ) 평가 미참여, 평가제외 시설인 경우에도 해당 사실·사유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

○○○청소년 수련원 홈페이지 예시

평가년도	평가기관	종합평가 등급	안전점검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2015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미흡	B	B	양호	보통	적합	부적합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종합평가결과 공개)**①태백시장은 시 및 수탁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합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종합평가를 공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탁운영비 정산 및 환수근거 규정 마련으로 예산낭비 예방

- 수탁자가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환수제도 마련으로 예산낭비 방지 및 부패유발 차단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위탁료 등 경비 환수)**①태백시장은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⑧ 부당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환수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 예산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환수방법을 규정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위탁료 등 반환 징수)**①제○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위탁취소 규정 강화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 본 조례에 수탁자가 거짓이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나 종합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등 위탁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법ㆍ부당행위 차단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반 및 위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개선 및 시정 조치에 불응했을 때	2.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반 및 위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운영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될 때	3. 보조금 등 운영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5. ○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개선 및 시정 조치에 불응했을 때
	7.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8.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9. 그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위탁 취소 시 의견청취 및 청문제도 마련

- 수탁자의 과실 등으로 위탁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고지,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처분 필요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의견 청취 및 청문)**①태백시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 수탁자 부실관리 방지장치 마련을 통한 부패 차단

- 수탁자의 관리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

● **개선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장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1. 취지
2. 추진절차
3. 시간계획
4. 컨설팅 실시현황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취 지

-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각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쌍방향 참여의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여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
- 정책·기획부서 법령 입안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시,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억제
- 중앙부처의 경우 개선권고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맞춤형 처방책을 제공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개선권고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율평가 역량강화에 초점

추진 절차

대상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 컨설팅 요청기관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과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대상기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유형
- 부패 취약 분야
- 반복적 발생 개선권고 사례

↓

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기관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 평가 사례 분석, 문제점 및 개선 대안 제시
- 질의·답변, 토론, 건의사항 청취

↓

사후평가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기관

- 설문(대상기관)
- 컨설팅 실시결과 보고(권익위)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컨설팅 취지 안내	총괄서기관
10:10 ~ 10:20	10′	부패영향평가제도 설명	총괄서기관
10:20 ~ 11:00	40′	지방자치단체 평가사례 분석	컨설팅담당
11:00 ~ 11:10	10′	휴 식	-
11:10 ~ 11:30	20′	컨설팅 대상기관 평가사례 분석	컨설팅담당
11:30 ~ 11:40	10′	부패방지시책평가 안내	시책평가담당
11:40 ~ 12:00	20′	질의·답변 등 설문	참석자

※ 컨설팅 실시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통상 2시간 소요)

컨설팅 실시 현황

연도	일시	기관구분	기관명	참석
2014	9. 4.(목) 09:30 ~ 12:00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24명
	12. 18.(목) 10:00 ~ 12:00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28명
2015	9. 17.(목) 10:00 ~ 12:00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12명
	11. 26.(목) 10:00 ~ 12:00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4명
	7. 17.(금) 10:00 ~ 12:00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26명
	7. 10.(금) 14:00 ~ 16:00	지방자치단체	천안시	25명
2016	12. 15.(목) 10:00 ~ 12:00	지방자치단체	청주시	25명
	12. 19.(월) 13:30 ~ 15:30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20명
	12. 19.(월) 13:30 ~ 15:30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교육청	20명

※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은 2014년부터 실시(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초 실시)

부패영향평가 관련 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 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 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 · 처리절차 ·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 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 · 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의뢰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③ 평가 의뢰 문서를 전달받은 평가담당자는 이를 인수하고 과장까지 선람하게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평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사항에 대한 결재 : 부패방지국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재 : 담당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보좌관(「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보좌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 · 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 · 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 ·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평가 요청된 제 · 개정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반기별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 ·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기초자료·세부자료 접수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세부자료의 접수,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 감사 · 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 · 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 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2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 · 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 · 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 · 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 ·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 · 관리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2016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실무 가이드]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전 화 | (044)200-7663
홈페이지 | www.acrc.go.kr
인쇄 및 디자인 |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T. 02-868-6854)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